

포스트 코로나19, 넥스트 팬데믹(Next Pandemic)에 대비하기 위한 유엔체제의 역할과 책임

박기철¹⁾ | 국방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넥스트 팬데믹(Next Pandemic)은 어떤 모습일까?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는 생물무기금지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s, 이하 BWC)이 인위적인 생물테러 및 공격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 발생하는 대규모 감염병의 출현을 예방하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

그는 “생물무기 테러나 전쟁에 대응하는 것과 대규모 감염병의 확산에 대응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강력한 보건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조건일 뿐 아니라 생물학무기 사용을 억제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국가적으로 연결된 글로벌 시대에 인위적인 생물학 무기 테러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방법은 다르지 않다. 이는 앞으로 **다가오는 넥스트 팬데믹(Next Pandemic)**이 자연 발생하는 감염병이 아닌 인위적인 생물무기테러나 생물무기전쟁으로 촉발 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자연적 기원은 아직까지 밝히지 못한 반면 중국의 우한연구소 기원설에 대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이 제공한 보고서에는 코로나19 발발이 공식 보고되기 한 달 전 중국의 우한연구소에서 3명의 연구원이 비슷한 증세로 쓰러져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앤서니 파우치(Anthony Fauci) 국립 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장(NIAID: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확신하는 질문에 “사실 그렇지 않다”고 답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²⁾

한편, 북한이 최근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한 사실은 오히려 북한의 생물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지난해 7월 폴리τικο(Politico)에 의해 소개된 북한의 생물무기 개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코로나 백신 개발을 이유로 각종 실험 장비를 도입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 장비들이 백신개발

이 아닌 생물무기 개발에 사용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³⁾ 탄저균과 천연두균을 미사일에 탑재하여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탈북 귀순자들에 대한 심문과정에서 입수한 북한군이 현재 천연두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는 정보는 북한의 생물무기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⁴⁾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1979년 천연두가 멸종 되었다고 선언하였지만, 북한은 이를 비웃듯 군인들에게 천연두 백신 접종을 지속하고 있으며, 북한 고위급 인사는 남한을 공격하는데 있어 이전에 없던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며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⁵⁾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비단 북한만이 아니다. 생물무기는 “가난한 자(者)의 핵무기”로 제조가 쉽고 무엇보다 저장, 이전, 사용에 있어 은닉하기가 쉽다. 따라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이외에도 이란, 시리아, 기타 비정부 테러리스트들도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점증하는 생물무기 위협을 고려할 때에 코로나19 이후의 넥스트 팬데믹은 자연 발생한 질병이 아닌 인위적으로 개발된 생물무기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유엔체제의 코로나19 대응과 한계

유엔 체제는 유엔의 주요기관 외에 독립기구와 전문기구, 보조기관 및 산하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엔 전문기구는 유엔헌장 제57조에 근거하여 보건,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제사회의 전문분야 별로 설립협정에 근거하여 창설된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이다. 글로벌 팬데믹에 대응하는 유엔의 대응은 크게 자연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대응은 WHO가, 인위적인 생물무기 사용에 대한 금지 및 협약 이행은 BWC와 BWC의 이행기구인 ISU(Implementation Support Unit)가 담당한다. 유엔 전문기구인 WHO, BWC ISU는 유엔과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의 일원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BWC와 ISU는 유엔 군축사무소인 UNODA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에서 업무를 관장한다.⁶⁾

1)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청와대, 국방부, 합참, 육군본부에서 대량살상무기 대응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에서 생물무기 사찰담당으로 근무하면서 UN 제네바 군축사무소 주관 생물무기금지협약(BWC) 베이징전문가회의 (2009), 마닐라 회의에서(2010)에서 정부대표로 활동하였다.

WHO가 신종 감염병의 확산방지에 대응함에 있어 따르는 국제법적 근거는 『2005년 국제보건규칙』이다. 이 규칙 제6조에 따르면 당사국은 질병 사태 통고 의무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이 사태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해당된다면 즉시 WHO에 통고해야 한다. 당사국은 WHO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태에 대응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2005년 국제보건규칙』 제6조를 위반한 국가를 제재할 수 있는 이행 강제 메커니즘이 빠져있고, 제6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당사국간 분쟁 발생시 강제적인 사법적 분쟁해결절차가 없어 규칙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⁷⁾ WHO는 최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을 공식 확인하는데 까지 44일이나 소요되었고⁸⁾ 이후, 친(親) 중국 행보로 논란을 일으킨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사무총장의 리더십으로 인해 미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WHO 탈퇴 선언 등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하였다.⁹⁾ 또한 글로벌 백신 협력 프로그램인 코백스(COVAX)를 운영하며 저개발국, 빈곤국에 대한 백신 원조에 앞장섰지만 자국민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백신 민족주의(vaccine nationalism)가 등장하면서 코백스 프로그램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WC는 오랜 역사를 가진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레짐이지만, 미국의 반대로 검증의정서(verification protocol)가 채택되지 못하였고 상설이행기구 설립에 실패하면서 협약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허약한 레짐으로 전락한 상태다. BWC와 함께 비교되는 화학무기금지협약(Cheical Weapons Convention, 이하 CWC)의 성공과는 대조적이다. BWC의 이행기구인 ISU의 상근 직원은 4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유엔 제네바 군축사무소(UNODA) 직원들이 겸직하는 형태이며, 한 해 예산은 맥도날드 점포 하나 보다 적은 예산으로 움직이고 있다.¹⁰⁾ BWC의 가장 큰 문제는 협약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강제력의 부재이다. BWC는 당사국의 자발적인 신뢰구축조치(C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이하 CBMs)와 국내입법에 의한 이행(National Implementation Measures, 이하 NIMs)에 의존하여 협약을 이행하지만 CBMs와 NIMs에서 기만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를 감시하고 제재를 가할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는

다. 즉, 신뢰구축보고서를 검증할 정기 및 강제사찰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대규모 감염병 유행에 대응해야 하는 UN의 메커니즘의 두 축인 WHO와 BWC는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 국제 경제·환경 레짐과는 달리 국제 안보현장에서 레짐의 효과성은 강대국의 실행 결정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¹¹⁾

코로나19의 교훈 그리고 유엔체제의 강화와 과학기술협력

코로나19는 글로벌 보건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웠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백신 수급 문제와 국제적 이동의 제한이 장기화 되면서 이로 인한 국가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 문제는 탈세계화의 기폭제가 되어 민족주의(nationalism)로의 회귀를 촉진하고 있다. 이는 다자주의 유엔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유엔체제가 이러한 도전을 넘어서 넥스트 팬데믹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 생물안전 그리고 생물보안에 대한 과학기술의 국제적 협력이 절실하다.

유엔체제는 WHO와 BWC를 통해 반세기에 걸쳐 다자주의 국제협력의 장을 제공해왔다. WHO는 저개발국과 빈곤국에 보건 시설 강화를 위한 지원과 질병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보건강화에 공헌하는 과학협력을 장려하였다. 특히 BWC는 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가간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에 대한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도 경험하였듯이 대규모 생물 사태(biological Incidents)는 자연 발생 질병이든 인위적인 테러 및 공격이든 초국가적 대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세계 국가들은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guidance)을 마련하고 대응 능력을 고르게 향상시켜야 한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들, 끊임없는 전쟁, 자연재해, 국가와 국가 사이의 항공 여행 등으로 인해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도 24시간 안에 세계 어떤 지역에라도 퍼질 수 있게 되었다. 어느 한 국가의 노력, 국지적인 대응으로는 글로벌 팬데믹을 막을 수 없다.¹²⁾

일반적으로 생물안전(biosafety)이란 생물과학분야에서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사람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Safety with respect to the effects of biological research on humans and the environment)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즉, 잠재적 감염 우려가 있는 미생물이 갖고 있는 인체 위해성을 평가하고 생물학적 지식과 실험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 등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실험종사자, 지역 사회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생물 재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생물안전의 기본요소로는 물리적 밀폐(physical containment)의 확보,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의 위해성 능력(risk assessment) 능력, 안전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risk management operation)이라 할 수 있다.¹³⁾

생물보안(biosecurity)이란 감염병의 전파, 격리가 필요한 유해 동물, 외래종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입 등에 의한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선제적 조치 및 대책을 말한다. 여기에는 생명과학 실험실에서 생물학적 물질의 도난이나 의도적인 유출을 사전 방지한다는 협의의 생물보안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생물안전이 우연한 사고와 사용에 대한 것이라면 생물보안은 의도적인 잘못된 사용에 대한 예방과 대처라고 볼 수 있다. 생물안전과 생물보안은 별도의 개념이기는 하나 반드시 하나의 운영체계가 같이 구축되고 관리되어야 그 효과를 상승 시킬 수 있다.

BWC가 초국가적 보건대응태세 강화에 기여해야 하는 이유는 협약 제7조, 제10조를 통해 알 수 있다. 협약 제7조는 협약 위반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는 당사국에 대한 원조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이다.¹⁴⁾ 그리고 협약 제10조는 평화 목적을 위한 설비, 물자 및 과학적, 기술적 정보의 교환, 국제협력에 관한 조항이다.¹⁵⁾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한 국가에 대한 원조 및 지원, 질병 감시 정보의 공유를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의 수립에 관한 국제협력을 BWC를 통해 강화하는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2021년 제9차 평가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감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의 대응을 평가하는 것은 이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을 성공적으로 저지시킨 국제협력의 교훈을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BWC 협약의 제7조와 제10조는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의도적으로 살포된 생물학작용제의

확산을 억제하는 능력을 강화하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는 능력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2011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였을 때, 영국은 BWC의 협약 제10조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적, 지역적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협약 제7조의 이행능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9년에는 BWC 당사국 중 비동맹 국가들을 중심으로 협약 제10조를 강화하기 위해 당사국간 질병감시정보를 공유하는 안(案)이 제안되었다. 비록 평가회의 본회의에서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을 얻었으며, 그 해 BWC 이행지원국(Implementation Support Unit, 이하 ISU)의 연간 보고서에 채택되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질병 감시 정보의 공유, 생물학작용제의 탐지와 진단 기술 지원 등은 생물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발전에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다. 2016년 8차 평가회의에서는 백신과 치료약 생산, 질병 감시, 탐지 및 진단, 감염병의 통제, 생물위험관리 분야의 국제협력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범세계적 협력체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당사국들이 깊이 공감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인류가 경험한 최악의 팬데믹 중의 하나인 코로나19 사태로 3,916,771명이 사망한 현재,¹⁶⁾ 이 엄청난 대재앙으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한 BWC의 역할 증대는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¹⁷⁾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유엔체제의 역할과 책임

빌 게이츠(Bill Gates)는 2015년 TED 강의에서 10년 내에 1,0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극도로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때문 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세계적인 석학 자카리아(Fareed Zakaria) 박사 역시 2017년 CNN방송을 통해 글로벌 팬데믹은 모든 국경선을 가차 없이 자르고 지나갈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그 예측은 3년이 지난 후 정확하게 현실이 되었다. 공교롭게도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 보건과 질병을 관리하는 핵심부서의 예산과 인력을 삭감하였다.¹⁸⁾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참담했다. 무분별한 난개발 결과 서식지의 파괴로 인류는 한번도 만나본 적 없는 바이러스들과 대

면하게 되었으며, 점증하는 생물무기의 위협으로 인해 인류는 핵무기에 이어 또 하나의 다모클레스의 칼을 머리 위에 두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코로나19는 1945년 이후 75년간 이룩한 국제협력의 구조를 한 순간에 파괴해 버렸다.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으로만으로는 극복 가능한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들은 국경을 폐쇄하였고, 백신 확보를 위해 국가들은 각자도생의 길을 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간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세계화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 흐름은 어느 한 국가의 노력으로는 거스르기 어려운 상황으로 급변하였다.

“질병의 발생은 피할 도리가 없지만 넥스트 팬데믹은 인간이 하기 나름이다.” 이는 45년 전 천연두 박멸에 공헌한 미국의 래리 브릴리언트(Larry Brilliant)가 한 말이다.¹⁹⁾ 유엔체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을 통해 두 가지 트랙으로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첫째, 유엔체제는 자연 발생 질병에 대한 대응과 의도적인 생물무기 테러 및 공격차단을 위해 WHO, BWC 등 레짐의 이행력이 강화되도록 국제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유엔체제의 두 기둥(pillar)인 WHO는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고, BWC의 강대국에 휘둘러 제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다. WHO의 법적근거인 국제보건규칙 제6조에 대한 이행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국가 간 공공보건 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서아프리카에서 창궐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2009년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9차 평가회의를 준비하는 전문가 회의와 당사국 회의가 열리는 2021년은 BWC의 이행강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9차 평가회의에서 당사국들은 새롭게 등장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2001년 중단된 검증의정서의 초안에 대한 합의를 재추진하여 BWC의 이행력을 강화시켜야 하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협약에서 규정한 제4조, 제7조, 제10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강화 방안에 대한 합의를 통해 BWC를 획기적으로 재설계하여야 한다.

둘째, 유엔체제는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인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통해 생

태계를 교란시키는 난개발을 멈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류가 문명의 확산을 대자연까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동물들은 바이러스의 숙주가 되어 인간과 공생을 시작하게 되고 인간은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항할 항체를 만들어 낼 때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고속성장을 대변하는 우한의 초고층 건물들은 대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인간의 탐욕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엄청난 후유증이 존재한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동굴에서 수십만 년을 지내온 박쥐는 날아다니면서 체온이 급상승하더라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진화하면서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들이 생존할 수 있는 최적의 숙주로 발전한 것이다. 서식지를 잃은 박쥐와 인간의 공생이 시작되면서 바이러스는 급속도로 인간 사회에 퍼지게 된다. 인간이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약 5천만 종(種)에 이르지만²⁰⁾ 끊임없이 돌연변이로 진화하고 증식하는 바이러스의 속성상 인간이 만나보지 못한 수억 종(種)의 바이러스가 지구상에 존재한다. 인간이 이들의 서식지에 대한 침범이 계속될수록 바이러스들의 인간에 대한 역습은 다시 재개될 것이다.

자카리아 박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수십 년이 흐르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느닷없이 몇 주 안에 십년 치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라고 말한 러시아 혁명가 레닌의 말을 인용하면서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의 ‘빨리 감기’ 버전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였다. 코로나19는 스페인 독감 이후 100년 만에 찾아왔지만 넥스트 팬데믹은 더욱 가까운 미래에 느닷없이 인간사회에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해선 안 된다.

- 1) Bio Weapons Prevention Project(2020. 7.), “A snapshot of pandemic lessons for the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Covid-19 impact report no.5, p.2.
- 2) 한겨레신문(2021. 5. 26.), 「코로나 우한연구소 기원설... 과학자들, 왜 다시 관심 가질까」.
- 3) Elisa D. Harris(2020. 12.), “North Korea and Biological Weapons: Assessing the Evidence”, 38 North Special Report.
- 4) US Army Headquarters(2020. 7.), “North Korea Tactics”, Army Techniques Publication 7-100.2.
- 5) Robert Lee(2021. 5.), “Smallpox vaccines against N.K. attack unusable”, The Korea Herald.
- 6) WHO는 헌장 전문에서 “건강의 증진과 질병 특히 전염병의 역제가 여러 국가 간에 불균등하게 발달하는 것은 공통의 위험”이라고 천명하고 글로벌 보건과 무역을 위협하는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각 국 정부와 국제공동체를 지원하고, 질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대응조치를 권고하고 있어 신종 감염병의 국제적 대응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박진아(2012),『전염병과 국제법』, 서울: 삼우사, p.68.
- 7) 정민정(2020. 3. 13.), “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응 관련 국제법의 한계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8) 한국일보(2021. 3. 27.), 「트럼프 정부 CDC 국장, 코로나,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됐다」.
- 9) 연합뉴스(2020. 4. 2.), 「미 정보당국, 중국이 코로나 19 통계 축소 은폐했다고 결론」.
- 10) Ord, T.(2020), “The Precipice : Existential Risk and the Future of Humanity”, New York: Hachette., p. 132.
- 11) 강대국의 실행결정요인에 따라 국제안보 레짐의 효과성이 좌우되는 현상에 대한 설명에 관해서는 Park, K. C.(2021), “An Inquiry for Weapons Mass Destruction Nonproliferation Regime Effectiveness: Great Power’s Commitment and Implications for North Korea’s Biological Weapons Threats.”, Ph D. diss, Korea University. 참조
- 12) Zakaria, F.(2020), “Ten Lessons for a post-pandemic world”, London: The Wylie Agency, p. 19.
- 13)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홈페이지(<http://www.nih.go.kr>) 참조
- 14) BWC 7조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안전보장 이사회가 협약 위반의 결과로서 어느 당사국이 위험에 당면하였다 고 결정할 경우, 도움을 요청한 그 당사국에게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원조를 제공하거나 지원한다.” (생물무기금지협약 정보망 홈페이지(<http://www.bwckorea.or.kr>)참조)
- 15) BWC 10조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세균성(생물성) 물체와 독소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설비, 물자 및 과학적, 기술적 정보를 최대한으로 교환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교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입장에 있는 협약당사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나 국제조직과 공동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다른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세균학(생물학)분야에 있어서 과학적 발견의 새로운 개발과 응용에 기여하는데 있어서 협력한다. (2) 이 협약은 세균성(생물성) 물체 및 독소가 본 협약의 제 규정에 따라서 평화적 목적으로 처리, 사용, 생산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교환되는 것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당사국이 평화적 목적의 세균(생물)연구활동 분야에 있어서 경제적, 기술적으로 발전하거나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행된다. (생물무기금지협약 정보망 홈페이지(<http://www.bwckorea.or.kr>)참조)
- 16) 세계보건기구 공식 홈페이지(<http://who.int>) 참조
- 17) Bio Weapons Prevention Project(2020.6.24.), “Covid-19 impact report”, no.3: The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Article VII and Article X discussions relevant to disease outbreak response. p.1.
- 18) 한겨레신문(2020. 4. 6.),「'삭감 또 삭감' 미 공중보건 예산·인력 10년째 줄어...코로나 '허약'」.
- 19) Brilliant, L.(2020. 3. 6.), “Outbreaks Are Inevitable, But Pandemics Are Optional”, Long New Foundation You Tube.
- 20) 대학지성 IN&OUT(2020. 2. 9.), 「다시 '바이러스'를 생각한다」.